

이슈브리프

-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생활 양립형 고용형태로서의 상용단시간근로 확대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입양의 우선적 대안은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래된 침묵, 여성연예인에 대한 성적 이중규범이 바뀌어야 깨질 수 있다
이 은 심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매체가 욕망하는 여성의 몸과 성, 여성의 몸과 성이 욕망하는 매체
이 영 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홍 승 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시작하며

우리사회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핵가족, 맞벌이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의 사회적 지원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현재 33,500여개소의 보육시설이 설립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시간적으로 보면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20년이 되었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관련법 개정 이후 10년이 되었으며, 이들 제도가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와 범주로 재구성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제도만으로는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보육서비스가 일하는 부모들의 장시간노동시간을 감당하려면 보육서비스 역시 장시간노동 작업장이 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같이 "행운을 얻은" 일부의 근로자들이 아니면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법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양육기에는 일정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등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노동장소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동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유연근무제"로 정의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근무형태로 발전, 확산시

키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발전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Arrangement)에 대한 이해

1) 유연근무제의 정의와 범주

우리사회에서는 매우 최근의 현상이지만 유럽사회에서는 이미 앞서서 유연근무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노동현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의 필요(needs)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노동현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한 욕구는 노동력 수요측과 공급측 양측에서 존재한다. 우선 기업측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측에서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필요한

제도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양측의 욕구 중 어느 쪽의 현실적인 욕구가 강하냐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 설계에서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유연근무제는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정형성을 완화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의 양(flexibility in the amounts of hours), 노동방식(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of hours), 노동장소(flexibility in the place)의 세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노동형태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의 양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란 파트타임 등의 노동시간단축 형태와 직무공유 형태가 있다. 노동방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 단위 혹은 주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시간의 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든지, 혹은 총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압축근무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장소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나 원격사무실과 같은 제3의 장소 등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 등이 해당된다.

〈그림 1〉 유연근무제의 정의와 범주



이슈브리프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의 정의 및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1〉 유연근무제의 정의 및 범주

구분	내용
시간제 근무(Part-time)	전일제근로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
시차출퇴근제(Flex-time)	1일 8시간(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매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5일보다 짧은 기간동안 근무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
집중근무제(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예. 10-12시)
재택근무(At-home Work)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원격근무(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자료: 행정안전부

영국정부에서 발표한 유연근무제의 범주도 연간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우리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시간제 근무(Part-time), 플렉스타임(Flextime), 연간근로시간제(annualised hours)¹⁾, 집약근무제(compressed hours), 자율시간제(staggered hours), 직무공유(job sharing), 재택근무(homeworking) 등이 구성되어 있다.

2) 유연근무제는 누가 주로 사용하는가?

유연근무제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집단은 자녀양육기의 일하는 부모들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 혹은 개인의 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 점진적 은퇴를 준비

하는 고령근로자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소득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제도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상층은 일하는 부모(17개국/20개국)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개인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12개국/20개국), 점진적 은퇴지원(11개국/20개국), 가족돌봄(6개국/20개국)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육아휴직후 시간제로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근무방식,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 일정한 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방식, 초과근무나 교대근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의 5개국에서는 대

1) 연간근로시간제(Annualised hours)란 연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연중 근로시간을 시기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함.

상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하고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Hegewisch & Gornick, 2008).

〈표 2〉 각국의 유연근무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관련 법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노동시간단축 보편적 권리			√			√	√	√						√								
부 모 권	점진적 복귀		√	√		√		√	√			√	√		√	√	√	√				
	시간제 부모휴가		√			√					√	√			√	√	√	√				
	노동시간 단축	√	√											√	√	√	√	√			√	
	초과/교대근무 거부	√													√		√		√			
성인 돌봄	노동시간 단축	√		√										√			√				√	
교육 훈련	노동시간 단축			√		√	√	√	√		√	√	√		√	√	√	√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		√	√		√	√	√	√		√	√	√				√	√				

자료: Hegewisch & Gornick(2008)

3. 외국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발달시켜온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가 꼽힌다. 영국은 유연근무제의 제도적 발달과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고용이 가장 발달된 국가로 대표된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유연근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 영국의 유연근무 청구권(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영국은 지난 15년에 걸쳐서 근로자들이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왔다. 1996년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에서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

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2000년의 「파트타임 근로규제」(Part-time Working Regulations)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파트타임-전일제 근무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여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고용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유연근무규제(Flexible Working Regulations)」를 통해 "유연근무청구권"(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후 2006년에는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유연근무제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대상과 범주를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초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대상은 "6세 미만 자녀(혹은 16세 미만 장애아)의 근로자"(2003년)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 "성인을 돌보는 근로자"(2007년)로, 다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2009년)로 계속 확대되었으며, 2010년 현재 유연근무 청구권을 전근로자에게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같이 영국의 유연근무청구권은 명확하게 "돌봄의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이것이 유연근무제 도입의 목적과 지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즉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명확히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유연근무청구권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제적 활용률을 높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청구권의 행사과정에 대해서 "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요청한 후 28일 이내에 고용주는 서면으로나 직접 만나 협의하여야 하며, 면담후 14일 이내에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right to request)"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고용주는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검토의무(responsibility to consider)"가 있으며,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기업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 기존의 근로자들과 업무조정이 불가능할 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할 때
- 업무의 질적인 면에 악영향을 미칠 때
- 유연근무를 요청한 기간동안 충분한 일이 없을 때
-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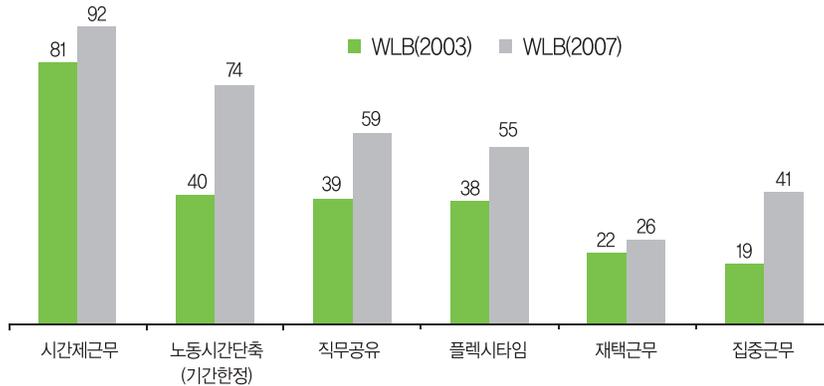
이같이 고용주의 거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용토록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지침서」(Working Time Directive) 개정(2008)에서도 고용주의 검토의무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정책발달에 대한 관심이다. 영국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하여 「일생활균형 실태조사」(Work-Life Balance Survey)를 매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각 제도와

문화적 변화를 시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시

간제근무, 노동시간단축, 직무공유, 플렉시타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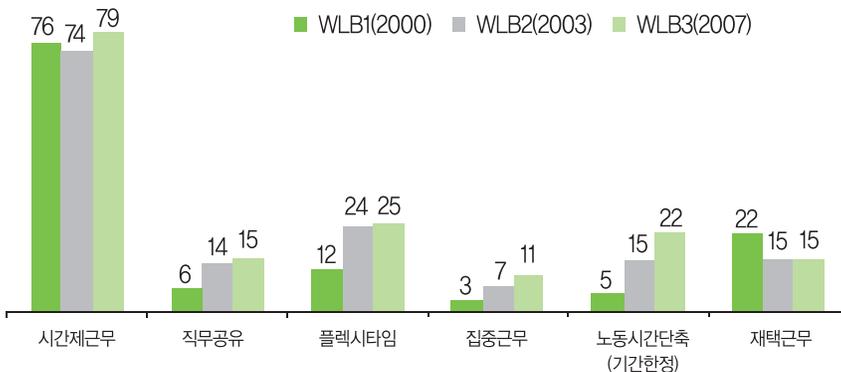


주: 5인 이상 기업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또한 2000년, 2003년 2007년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도 이용현황을 보면, 재택근무를 제외하고 모든 근무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근무유형은 시간제근무, 플렉시타임, 노동시간단축, 직무공유, 집중근무 등의 순이다.

〈그림 3〉 영국기업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변화(200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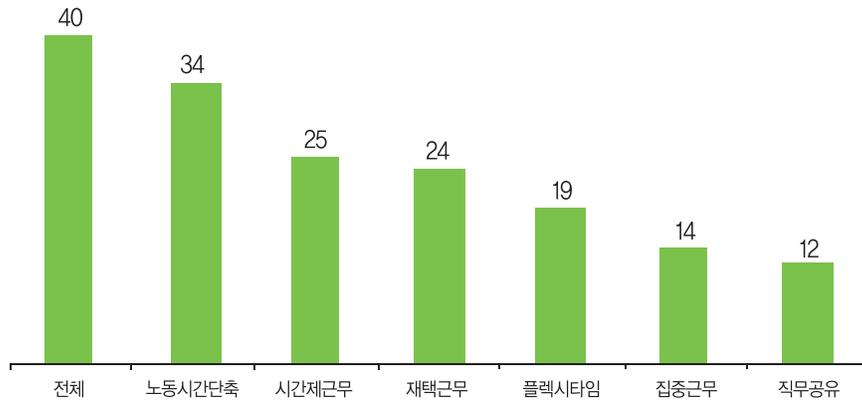
주: 5인 이상 기업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이슈브리프

한편, 유연근무청구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근무유형은 노동시간단축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시간제근무, 재택근무, 플렉시타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단축이 가장 높

은 청구내용으로 나타난 것은 이미 영국기업에서는 파트타임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추가로 근로자들의 요청사항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더 많이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4〉 영국기업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청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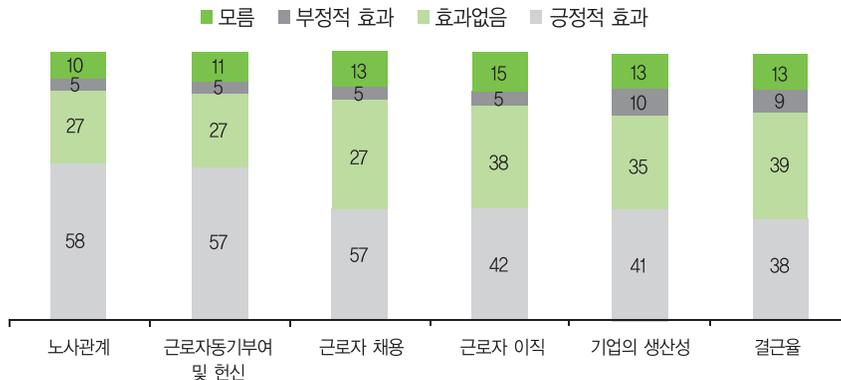


주: 5인 이상 기업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그렇다면 기업들이 평가하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가장 큰 효과는 노사관계의 개선과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외 근로자 채용의 문제개선, 근로자 이직감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유연근무제도 및 휴가제도의 효과



주: 5인 이상 기업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2)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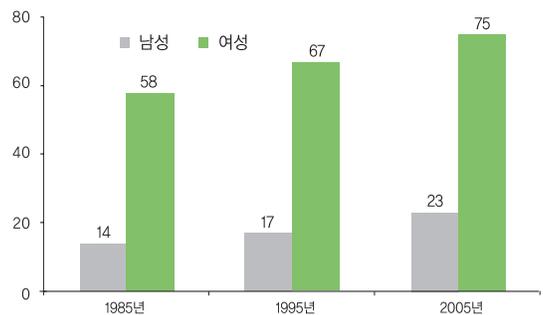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고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총고용 대비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이 46%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 23%, 여성 75%로 나타난다(2005년).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이 확산되고 보편화된 배경에는 1992년의 바세나르협약,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보호 및 차별금지 노력,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사회문화 등이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정부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노동시간단축 전략을 강력히 사용하게 되었다. 즉 전일제노동을 표준화하는 대신 광범위한 범위의 파트타임을 확산시켜 소위 "1.5 소득자 모델(one-and-a-half earner)"을 정착시키게 된다²⁾.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파트타임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포함한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는 법제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19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of Working Hours Act)을 도입하여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등에 있어서 동등한 처우를 강조하여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기반을 정비하게 된다. 이후 2000년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Hours Adjustment Act)을 통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청구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이 법은 파트타임 노동과 관련된 기존의 업무 관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물론 남성의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남성들은 학생이나 노령층이 파트타임 고용의 주요한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가장 많아 역시 노동시장과 가족 내 젠더역할의 분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6〉 네덜란드 파트타임 고용비율(총 고용대비)



자료: Eurostat (2006), Employment in Europe

3) 미국의 「근로가족을 위한 유연근로법안」 (Working Families Flexibilities Act)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유연근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근로가족을 위한 유연근로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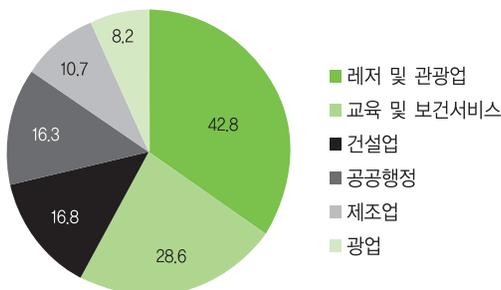
2) 2005년 현재 네덜란드의 가족형태를 보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의 46%가 이러한 가족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전일제노동으로 근무하는 부부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SCP, 2006).

이슈브리프

(Working Families Flexibilities Act)이 의회에 발의되었으며, 올해 3월 31일 오바마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유연근무 포럼」(White House Forum on Workplace Flexibilities)에서도 유연근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추진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물론 기업복지가 발달한 미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도입과 이용률도 이미 상당수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제근무 중 자발적 근무가 63%, 비자발적 근무가 3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시간제 근무이유도 개인적인 일, 가족책임, 교육, 훈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족책임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경우가 45.5%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이유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성별분리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산업별로 시간제근무 분포를 살펴보면 레저 및 관광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 건설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미국 파트타임 고용의 산업별 분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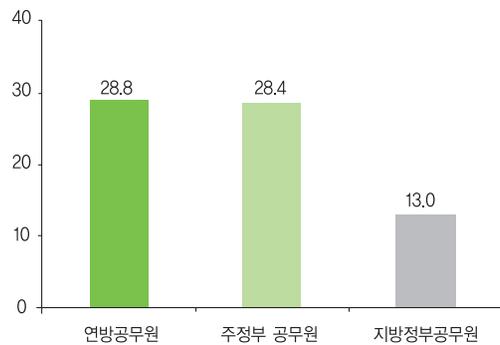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Workplace Flexibility, 2010에서 재인용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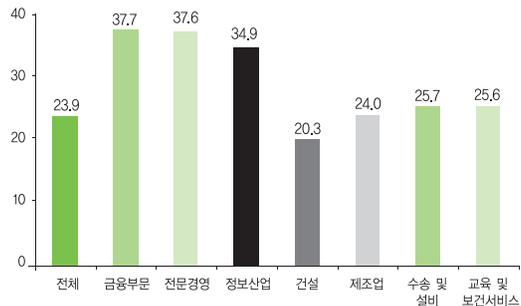
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연방공무원과 주정부 공무원의 경우 약 1/3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문경영, 금융, 정보산업 등의 영역에서 유연근무제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미국의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현황(2005)



자료: 미국 노동부, Workplace Flexibility, 2010에서 재인용

〈그림 9〉 미국의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현황(2005)



자료: 미국 노동부, Workplace Flexibility, 201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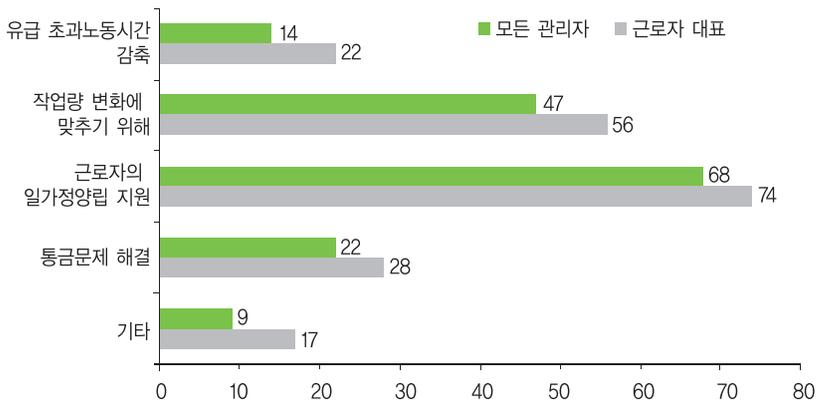
4. 향후 발전과제

유연근무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EU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일가족양립 지원"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작업량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통근문제 해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유럽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이유



자료: EFILWC(2006).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 companies

특히 시간제 고용의 경우에는 제도의 필요성이 기업측과 근로자측 중 어느쪽에서 더 강조되었는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업측에서의 요구가 강조될 경우에는 시간제고용의 차별금지나 보호적 측면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근로자측에서의 요구가 강조될 때에는 시간제고용의 보호와 동등한 처우를 강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가족양립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고용이 안정적으로 확대된 것과, 영국에서의 시간제고용이 노동시장 내 주변적 지위로 확대된 과정을 통하여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의 이와같은 양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노동에 대한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일가족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연근무 근로자에 대한 제반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고 이들에 대하여 임금, 고용안정,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정지(整地)작업으로 필요하다.

또한 유연근무제도는 여성근로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부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회제공으로도,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의 수단으로, 장애인의 취업지원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진국의 자체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여성편중의 사용실태를 미리부터 예방할

이슈브리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연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세계적인 장시간근로관행을 개선하는 우리사회의 노동환경과 노동문화의 변화이다. 마침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장시간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한다. 이 합의문에 의하면 2020년까지 근로시간은 연간 2050시간에서 1800시간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근로환경이 장시간근로와 야근, 퇴근 후 회식문화 등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근로자가 개인의 선택권으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연근무제의 중요한 목표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일가족양립의 지원 성격을 지향한다면 부모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육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어떤 형태의 근무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대에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향은 보육서비스가 부모들의 장시간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부모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고, 혹은 보육시설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근무유형 개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교사의 장시간근로, 부모의 장시간 근로, 아이들의 부모와의 가족시간 부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저출산의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최근 여성노인가족청소년부(BMFSFJ)의 주도하에 근무유형의 변화, 보육인프라 확충, 가족친화 기업의 확대 등 다양한 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저출산문제의 해결, 일가족양립의 해결을 노력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 · 고 · 문 · 헌

- 홍승아 외(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와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 EFILWC(2006),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an companies
- Eurostat(2006), Employment in Europe, 2006
- Hegewisch, A & J. Gornick(2008), Statutory Routes to Workplace Flexibilit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stitute for Women's Policy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2006), WORKPLACE FLEXIBILITY 2010
- Women and Work Commission(2009), Shaping a Fairer Future : A review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men and Work Commission three years on

일-생활 양립형 고용형태로서의 상용단시간근로 확대

황 수 경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장시간 근로시간과 남성부양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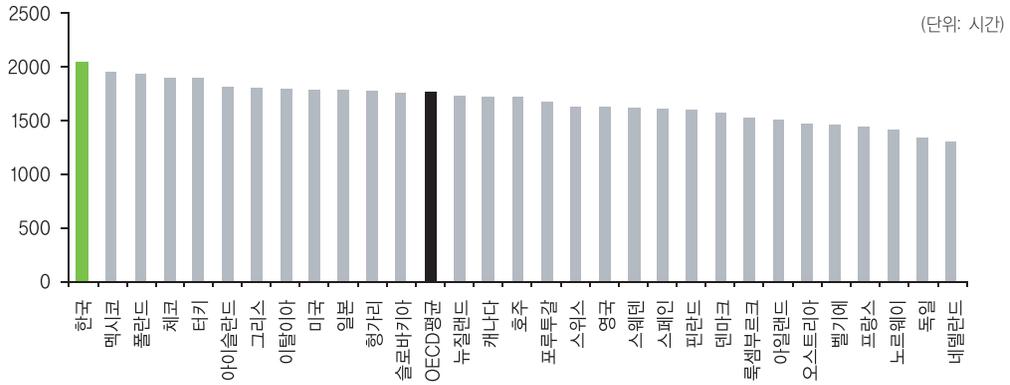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을 일자리 특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근로시간은 개인의 근면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래 일하는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이 풀타임 근무에 추가적인 잔업, 특근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연간 2,057시간)을 자랑(?)하는 국가로 만들었다.

근로시간은 소득과의 관련성 때문에 완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근로시간이 줄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초과근로를 따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무직에서는 아예 일정시간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정 O/T 제도가 관행화되어 있다. 2002-3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주된 논지는 소득이 온전히 보장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추가시간을 할애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이를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서 시간의 기회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한 사람이 이처럼 장시간 근로를 하는 동안 누군가는 가족을 보살피고 가사노동을 챙기는 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라면 남성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이 보편적인 사회라고 해도

이슈브리프

〈그림 1〉 OECD 국가의 연간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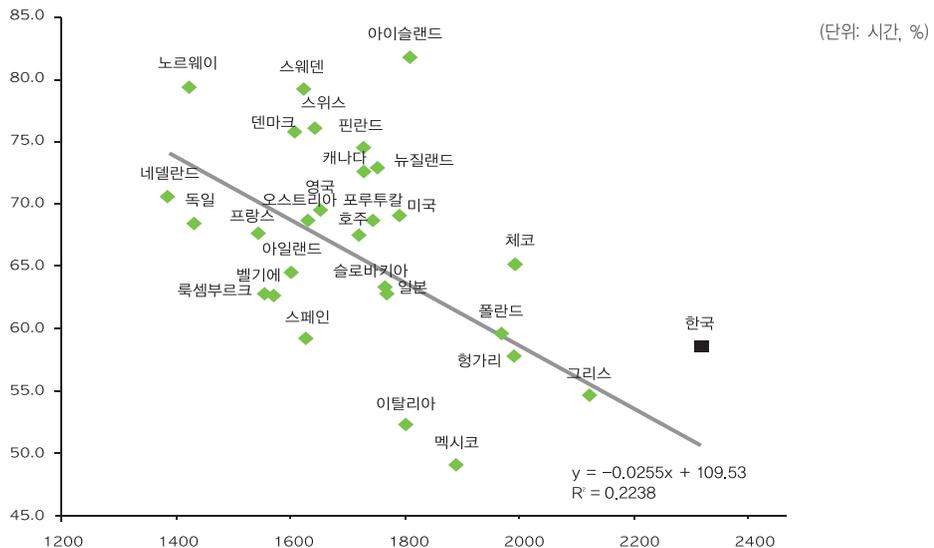
*자료: OECD, Stat, 2010, 5.

과업이 아니다.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사회, 다시 말해 미혼 혹은 가장인 남성을 주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사회에서만 장시간 근로시간 시스템이 존속될 수 있다.

〈그림 2〉는 OECD 국가들의 취업자 평균 연간근로시간과 여성(25-64세) 고용률(=취업자수/인구

수)을 도시하고 있다. 예상하는 대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는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연간 근로시간과 여성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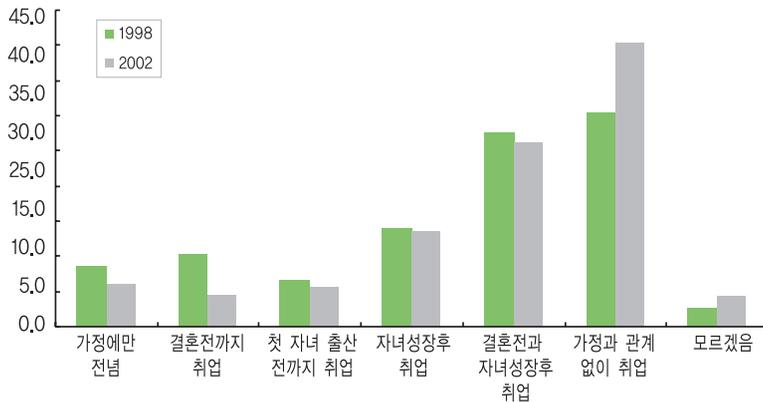
자료: OECD, Stat, 2010, 5.

그렇다면 남성 1인이 가장으로서 주소득원이 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닐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세대의 여성과 남성들은 맞벌이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 후에도 일정 수준까지 개인의 독립성을 유

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가구 전체로서 금전적인 안정을 꾀하려면 맞벌이는 필수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남성부양자 모델이 지배적인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여성들의 결혼이 미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또한 거시적으로도 남성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sustainable)하지 않아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로 2020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성인 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방법이 없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레짐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가구 단위로 경제활동(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이 분업화되어 가정과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왔다면, 앞으로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포함해 삶과 관련된 모든 사적 활동 간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과 추가적인 임금보상보다는 정시퇴근이나 단시간 근로, 그리고 개인생활의 영위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근로시간과 일-생활 균형(WLB)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생활 균형(WLB: work-life balance)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시간 배분의 문제이다. 일-생활 균형을 추구함에 있어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제약은 시간제약이고, 따라서 개인은 주어진 시간을 일과 개인생활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배분의 문제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의 노동 공급은 가족 내 역할 구조에 따른 양육과 가사 책임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양육 및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남성은 시장노동으로 집중되고 특화되는 경

향을 보인다(Gary Becker, '가족경제학'). 이렇게 성별로 역할 분담이 분명한 사회일수록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남성 중심의 풀타임 장시간근로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표 1〉은 우리나라에서 성 역할 구조에 기초하여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하지 않은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하루 평균 4시간 15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반면 기혼남성은 단 39분만을 소비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가사노동시간은 여성 3시간28분, 남성 32분이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시장노동에는 기혼남성은 5시간 28분, 기혼여성은 2시간 43분을 사용하여 전형적으로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세 성인의 혼인 및 취업상태별 1일 평균 시간사용 실태

(단위 : 시간 : 분)

	미혼		기혼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시장노동	4:08	4:10	5:28	2:43	6:34	5:14	6:26	0:05
가사노동	0:21	0:49	0:39	4:15	0:32	3:28	0:31	6:25
소계	4:29	4:59	6:07	6:58	7:06	8:42	6:57	6:30

주: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배우가구 중 부부 모두 취업한 가구와 남편만 취업한 가구로 파악됨.
 자료: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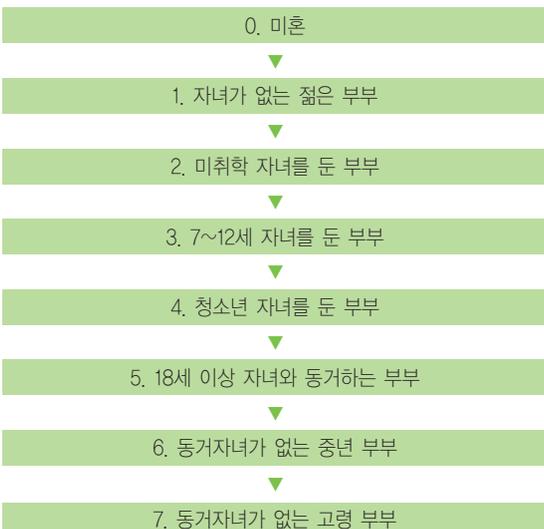
시간배분의 문제는 특정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근로시간의 배분과 조절이라는 동학적인 결정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생애경로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이다. 생

애경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시간의 배분에 대한 일정한 선호를 가지며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양, 즉 근로시간을 달리 조절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 달리 표

현하면, 개인 혹은 가족과 관련된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에서 일에 대한 투입시간을 줄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근로시간을 늘임으로써 총체적으로 개인과 가구의 생애경로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선택권 혹은 재량권과 관련된 근로시간의 배치와 편성의 문제도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생애경로 관점에서, 개인과 가구의 생애경로를 대표적인 가구유형으로 구분하여 배열하면 <그림 4>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다. 특정 개인과 가구는 대체로 그림에서 보여지는 생애경로의 과정 중 하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당연히 각각의 가구유형 혹은 단계별로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에도 변화가 초래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근로시간 배분에 반영되게 된다.

<그림 4> 개인 및 가구 유형으로 파악되는 생애경로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재배치 논의는 이러한 생애경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가구의 위험을 국가가 어떻게 완화시켜주고 제도적으로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는지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예컨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층(0)이나 자녀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부모(2,3)에게는 파트타임 근로에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특정시점에서 개인적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장휴가(extended leave)나 근로시간 계정제 (working time accounts)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에서의 재량의 폭을 넓혀주며, 중고령자(7)에게는 단계적 은퇴방안을 마련하여 일과 소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매 시기마다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간배분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단시간 근로와 여성의 경제활동

단시간근로(part-time work)는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형태를 지칭한다. 최근 여성, 청년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단시간근로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시간근로를 하나의 대안적 고용형태로 이해하기보다는 근로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유희인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기업들은 정규 일자리를 단시간근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단시간근로 확대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뿐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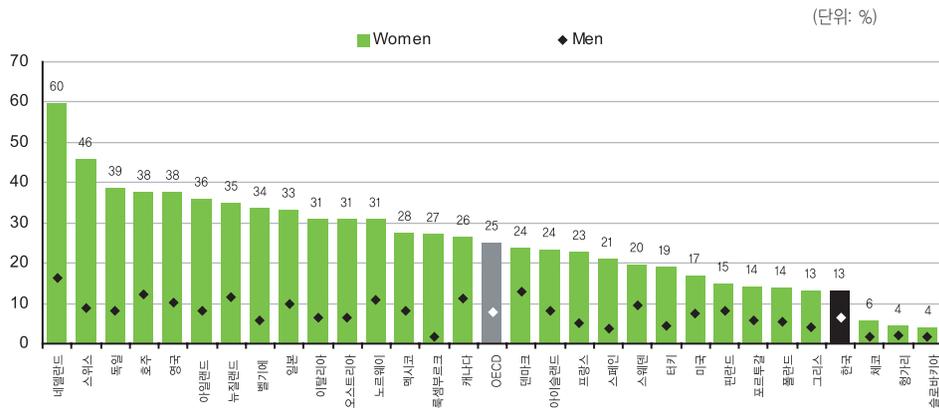
이슈브리프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는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청년층, 여성, 고령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인구계층의 고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한 유용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파트타임 고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어 서구사회에서 급속

히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취업자 중 파트타임 고용비중은 13.2%로 OECD 평균 25.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가사·양육부담을 주로 떠맡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경직적이고 파트타임 고용이 덜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성 경제활동참가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림 5〉 취업자 중 파트타임 고용비중 (2008)



주: 파트타임 고용은 주된 일자리에서 1주 30시간미만 일한 사람으로 추정.
 자료: Incidence of FTPT employment—common definition, OECD, Stat

OECD 국가들에서 여성 파트타임 고용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트타임 고용이 가장 활성화된 네덜란드에서는 여성 취업자의 60%가 파트타임이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3.2%에 달한다. 스위스, 독일, 영국 등도 여성 파트타임 고용비중과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 및 노동시장 구

조가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여성 파트타임 비중은 33.2%, 경제활동참가율은 67.3%로 우리에게 비해서는 파트타임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데는 노동시장에서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가 덜 발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 참여 및 시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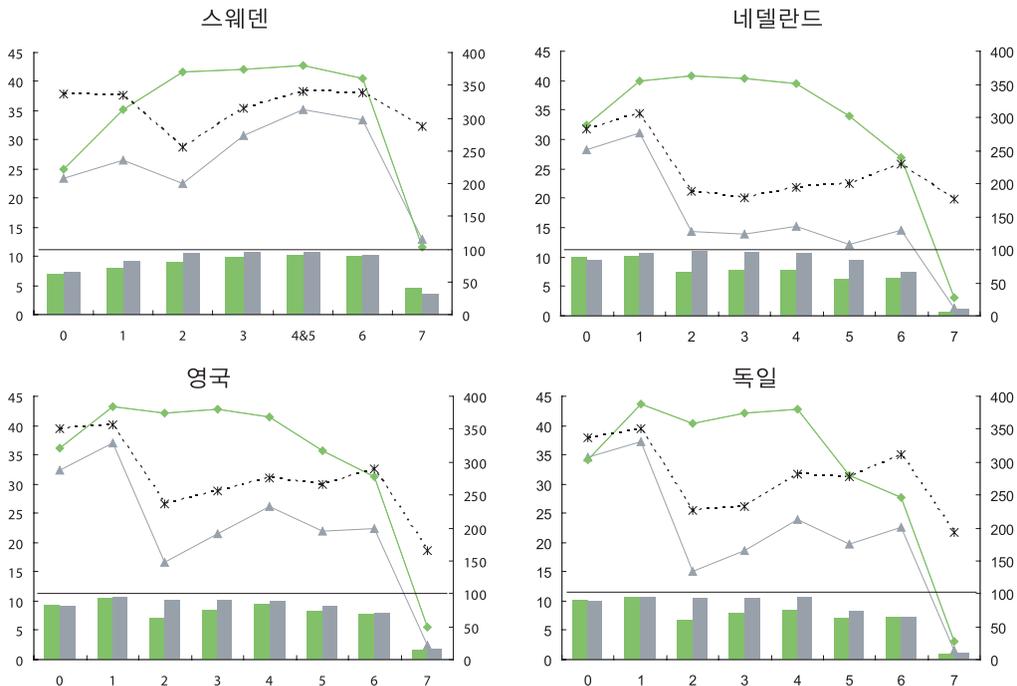
한편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은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사노동 수요가 변화하는 생애과정에 따라 노동공급 패턴이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공급 특성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로 파악되는 M자형 노동공급 구조로 집약될 수 있지만, 결혼, 출산, 자녀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생애과정의 요소들과 결합된 시간배분의 문제로 분석된다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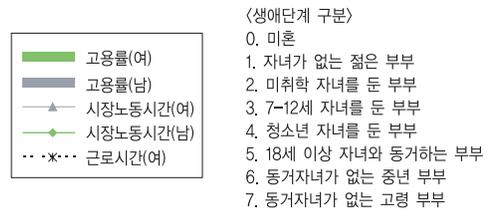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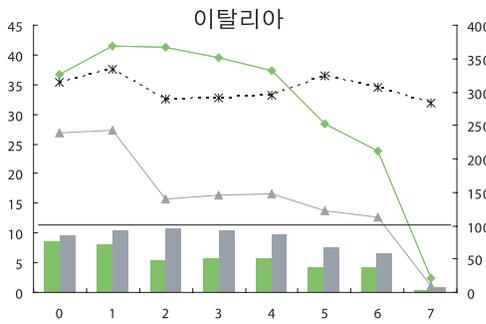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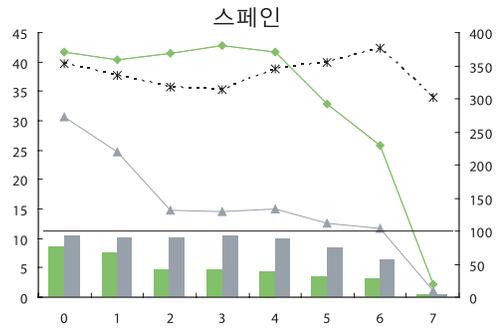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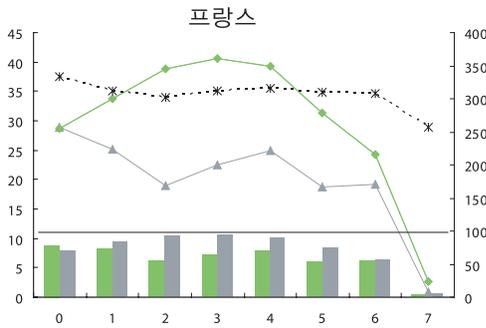
〈그림 6〉은 생애단계별로 부부의 시장노동시간, 고용률, 취업자 근로시간 등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노동시간, 고용률, 취업자 근로시간은 생애단계별 가사노동 수요변화를 전제로 여성의 노동공급 특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레짐의 효과를 분석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기에 경제활동이 지속되는지 혹은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부담이 줄어든 시기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지, 복귀한다면 어떤 근로시간 형태를 취하는지 등에서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네 국가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EU, 2006; Anxo et al., 2007).

〈그림 6〉 유럽 국가의 생애단계별 시장노동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및 고용률





자료 : EU(2006), Working time options over the life course

i) 보편화된 2인소득자형 (스웨덴)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전 생애에 걸쳐 배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시기에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시기의 여성들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시간제약을 극복하고 있다.¹⁾ 이후 자녀가 자라서 취학연령대에 들어가면 다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다. 즉 스웨덴에서는 노동시장에 별도의 파트타임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채용된 여성이 필요한 시기에 풀타임↔파트타임 간 전환을 통해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스템이고 따라서 노동시장 전체에서 파트타임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ii) 여성 파트타임형 (네덜란드²⁾, 영국, 독일)

이들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은 스웨덴보다는 낮지만 전 생애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시기에서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용율도 낮아지지만 고용률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서 고용률은 예전과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기

1)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쪽이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2) 파트타임고용이 가장 활성화된 네덜란드는 이른바 파트타임근로모델(부부당 1.5인 취업)을 채택하여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고용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3% 수준까지 낮추는 등 성공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여주면서 'Dutch Miracle'로 주목을 받았다.

혼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풀타임보다는 주로 파트타임 형태로 취업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의 여성 파트타임 고용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이들 국가에서 여성은 시장노동보다는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역할이 주어져 있으며 파트타임 활용에 의해 여성 고용률이 지지되고 있다.

iii) 약한 남성부양자형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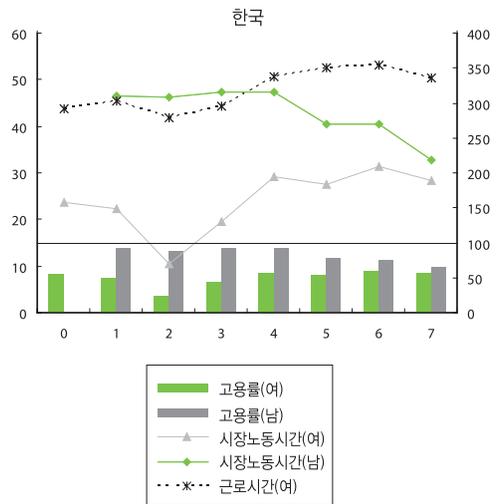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다소 낮은 고용율과 높은 파트타임 비중을 보이는 국가에 해당한다. 결혼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시기에는 상당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만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영국, 독일 등과 달리 노동시장이 풀타임 고용 위주로 되어 있어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풀타임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iv) 풀타임-이탈 양자택일형 (스페인, 이탈리아)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고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은 풀타임 고용을 근간으로 작동되고 있어, 기혼여성은 가사부담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풀타임 고용을 지속하든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들 국가의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성 역할이 가장 확연하게 구분되며 그 결과 남성의 장시간노동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로 특징지어진다.

위의 분석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시간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EU(2006)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장시간 풀타임 고용 위주로 되어있고 이로 인해 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강요 받는다는 점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이들 국가보다도 5-10시간 이상 길다. 그러나 자녀양육기가 지나면서 여성 고용률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점은 프랑스와 더 유사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여건이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우리나라의 생애단계별 시장노동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및 고용률



자료: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특히 장시간 풀타임 근로여건은 여성이 가사노동 부담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유지하

이슈브리프

기 위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맞벌이가구 여성은 그 배우자에 비해 주당 10-15시간의 노동(가사노동 포함)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벌이가구 여성과 비교하면 무려 40시간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취업여성 가운데 노동시장에 단시간만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만족스러운 시간배분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노동 부담이 없는 남성의 경우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추어 취업여성은 과다고용, 미취업여성은 과소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 상용형의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남성부양자형 국가이며 여성이 육아 및 가사부담의 책임을 지는 공고한 성별 역할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 활용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자녀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것과 동시에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가 임시적 고용형태로만 간주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에서의 육아기 파트타임제, 일본의 '단시간정사원 제도',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파트타임 고용제도(P TES, Part-time Employment Scheme) 등에서 보듯이,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반드시 비정규직 일자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트타임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한계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서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상용형의 단시간근로가 그것이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한시적이거나 보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나아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대로 된 자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황수경 외(2008),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4),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9), 『생애단계별 여성의 시간배분과 노동공급』,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 Anxo et al.(2007), Patterns of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time policies, Socio-Economic Review, Vol.5, No.2, pp. 233
- EU(2006), Working time options over the life course: New work patterns and company strategies.

해외입양의 우선적 대안은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¹⁾

이 미 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입양의 우선적 대안은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

임시적 조치로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최대 입양송출국이 되었다. 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을 방문하고, 어머니와 친가족을 찾으려 한다. 한국사회는 이들을 보며 입양 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잘 자라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입양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다. 이들의 사회적·교육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뿌리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입양인들은 자신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E. Kim, 2007).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족, 소속감, 역사를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한국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이 대규모 입양으로 해외에 송출된 것은 미혼모 가족을 위한 내부적 복지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와 입양인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었다. 입양인들과 입양 보낸 어머니에게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입양인이 어머니와 헤어지는 경험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긴다. 자녀의 포기로 경험한 슬픔과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외국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포기하고 여러 해가 지났어도 입양 보낸 어머니는 자녀 상실의 슬픔을 경험한다고 한다(최승희, 2010). 본 글에서는 미혼모와 입양인의 경험을 통해서 친가족과의 이별이 이들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면서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이들이 친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해

1) 본 원고는 이미정 김혜영 김승연 류연규(2008)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 이슈브리프

주는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입양을 보내는 어머니

사람들은 미혼모가 입양 보내면 아기와 헤어지기만 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혼모도 입양을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위로하며 아기의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그러나 미혼모 엄마와 헤어진 아기의 삶이 예상처럼 순조롭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미혼모들은 아기를 입양 보내고 상실감과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고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1999년 도로우(Dorow)에 의해서 편집 출간된 「너의 삶이 아름답기를 기원한다(I Wish for You a Beautiful Life)」라는 제목의 미혼모 편지모음집은 아기와의 이별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큰 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Dorow, 1999).²⁾ 이들 편지에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자책하고 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입양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키울 수 없는 아기를 갖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받는 축복을 나는 느끼지 못했다...처음에 나는 죽어 버릴까 아니면 낙태를 할까에 대해 고민하였다... 산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책을 읽으며 태아교육에 전념하였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나중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될까, 입양부모는 누가 되실까 생각하며 여러 밤을 보냈다. 네 얼굴을 보고 산고 끝에 네가 처음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거품처럼 사라졌다...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를 포기해야 했다. 아마 나를 미워하겠지. 무능력한 엄마와 사는 것보다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기 때문에 너를 보내야 한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서 너[아빠 없는 아이]에 대한 편견이 강해서 미혼모 아이로 너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잔인할 것이라.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미칠 것 같단다. 모든 것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너를 한 번도 평온하게 안거나 내 곁에 누이지 못해 가슴이 아프구나 (편지 6, Dorow, 1999).

어머니는 입양을 아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과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입양아동: 버려짐을 두려워 함

어머니를 떠나 입양된 아동은 어머니의 바람처럼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입양된 아동의 삶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친가족과 이별한 후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부모를

2) 1999년 자료(Dorow, 1999)에 소개된 미혼모 시실 애란원에서 머물다 자녀를 입양 보낸 어머니들의 편지이다. 애란원에서는 편지쓰기 작업을 통해서 아기와의 이별로 고통스러워 하는 미혼모의 상처 치유를 돕고 있었다.

만남에 따라서 겪게 되는 두려움은 공통적 경험일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심리학자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국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두려움의 내용을 파악하였다(Wilkinson, 2007).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입양아동들은 입양이라는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대응하고 있었다. 이들 아동에게 입양은 우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얻는 것을 의미했으며 양부모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보였다. 아동들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보였다.

친가족과 바로 헤어져 입양된 경우나 위탁양육을 거쳐서 입양된 경우 모두 유아나 아동은 1차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양육자로부터 격리되는 충격을 경험한다. 이것은 어린 입양아동으로 하여금 친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입양부모도 언젠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준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자전적 이야기 속에서는 어린시절 경험했던 이러한 두려움이 표현되고 있다.

침대에 누우면 네덜란드 가족들이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독한 격리감 속에서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나를 입양한 걸까 그들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친어머니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낯선 이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 역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언제나 나와 함께했다. 나의 한국가족이 결국

그렇게 했으니,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네덜란드에서의 처음 육칠년 동안 나는 부모님이 자러 가기 전에는 잠들 수가 없었다. 다락방에 누워 언제나 아래층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는 내게 그들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나를 버리고 가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이성엔 내게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디인가는 부모님이 자러 가는 소리를 들어야만 근심에서 놓여나곤 했다. 부모님이 자러 가는 소리를 듣고 나면, 나 역시 평온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윤주희, 2007).

1차적 양육자와의 관계가 영속적이지 못한 것을 한 번 경험한 아동은 입양부모와의 관계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와 행실이 입양부모와 계속 함께 사느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입양아동은 최대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여 일반아동과 비교해 조숙한 모습을 보인다(Wilkinson, 2007).

네덜란드 부모님에게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한국의 가족들을 상실한 슬픔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과 그들의 친딸처럼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 사이에서 나는 동요했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를 버릴 것이라는 느낌이 늘 뒷머리 어딘가에 머물렀다.... 11살, 12살이 되어 내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게 된 후로, 그러한 생각은 나를 깊이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딸, 그들의 친딸처럼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조숙한 아이가 되었고, 어린아이로서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었다(윤주희, 2007).

윌킨슨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처음 놀이에서 지나

:: 이슈브리프

치게 청결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물을 흘리지 않거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다(Wilkinson, 2007). 이들 아동은 부정적 감정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불안하게 느낄 때 미소를 짓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웃었다.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Wilkinson, 2007).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만일 내가 어떻게 화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보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아동들은 지나칠 정도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선택했어.” 엄마는 늘 이렇게 말한다.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를 때 쓰는 말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가게에 일렬로 진열된 인형들을 쭉 훑어본 다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오늘 엄마 없이 홀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 가슴 떨리게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힌다. 난 다시 가게로 돌려보내질 지도 몰라. 나는 보다 더 착하고 더 철이 든 여자아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따윈 하지 않는 아이와 교환될지도 몰라. 아니야,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여기 있고 싶어.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해. 한국 어머니에 이어 미국어머니까지 날 버린다면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날 원치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인형 가게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할 테지.... 나는 아주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그러면 엄마가 날 데리고 살테지. 더 이상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을 거야. 엄마를 화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래. 엄마에게 아주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완벽한 아이가 될 거야(트렌카, 2005).

입양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부모를 갖게 해준 것이

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안정된 세계를 제공해준 것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는 새로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발전하지만, 친자식이 아니기에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한다(Wilkinson, 2007). 새로운 부모와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친부모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친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버려지거나 포기되어진 이래로 아동들은 친부모 특히 생모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편다(Wilkinson, 2007). 왜 엄마가 자신을 키울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고 동시에 입양부모가 자신을 버리면 어떻하냐를 계속 걱정한다.

입양인들의 정체성 찾기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아동기부터 시작된다(Wilkinson, 2007). 이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지표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미국에서 한국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집, 학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다. 심한 놀림을 당하거나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편견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Wilkinson, 2007).

한국 입양인들 중에는 친가족이나 출신국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입양되어 온 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중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한다(E. Kim, 2007).

미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어린시절, 백인문화에서 산다는 부정적 경험,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백인 가

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 이들을 한국과 연결시켜준다(E. Kim, 1997). 많은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한국인 입양인으로서 과거의 기억을 파헤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입양인들의 다양한 네러티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양인들은 “왜 나의 부모는 나를 키울 수 없었는가?”, “왜 나는 외국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H. Kim, 2007).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위협적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표현을 자제한다(Hurdis, 2007).

한 입양인은 “나의 정체성, 인종,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가슴앓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털어 놓는다(Hurdis, 2007. 다른 한 입양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혼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내가 양육된 대로 백인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외모상으로 보이는 아시아인으로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Bruining, 1997).”

입양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경험을 쏟아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

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한 한 네덜란드 입양인은 자신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내 꿈은 한국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부모에게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내 이야기가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몇 개월에 걸친 고생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다. 내가 겪은 고통과 슬픔이 어떤 가치 있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내 한국 어머니가 통과했던 고통과 죄책감과 수치심의 시간 역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이 그렇게 흘러온 것에 감사할 수 있다(윤주희, 2007).

미혼모의 변화: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입양인이 타문화·타인종사회에서 성장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어머니와의 헤어짐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미혼모들은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려는 어머니들이 늘고 있다. 양육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육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약화와 미혼모 자신의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아직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육 미혼모가 많지는 않지만, 출산과 양육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과거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유엔인권포럼에서 출간한 양육미혼모의 사례를 보면(유엔인권포럼, 2009), 피

이슈브리프

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을 하였지만 출산 결정에 대해서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기가 자신 삶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을 표현하기도 한다.

저는 솔직히 미혼모라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 양부모가 있어도 이혼을 할 때면 서로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서 못 키우게 되어서 아이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 주위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부끄럽다면 우리 딸도 물론 부끄러운 아이가 되니까요. 전 미혼모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욕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례 25, 유엔인권포럼, 2009).

싱글맘이나 미혼모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입양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떨어져 살지 않아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을 선택한 후 출산하고 아이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정말 이제 지금 당장 다가올 생계비와 직장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입니다. 같이 굶어 죽더라도 아이하고 떨어져 살 생각도 없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사례 20, 유엔인권포럼, 2009).

마무리하면서

입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이 요보호 아동에게 안정적 가정을 제공하는 복지

수단이기는 하지만, 아동복지와 관련된 원칙에서는 해당 사회가 입양에 앞서 아동이 친부모와 결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3년 헤이그협약에서도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대상 아동이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키우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사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보내지 않고 스스로 키우려는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혼모에게 아동양육 지원이 보장된다면 입양보내는 미혼모 수는 크게 감소할 것이고, 친가족과의 이별로 평생 혼란, 고통,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입양의 대안을 논의할 때 항상 미혼모 가족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혼모의 자녀양육 포기를 소홀히 하고 외면할 만큼 여유 있는 사회가 아니며, 출생아가 어머니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차별받도록 내버려둘 만큼 여유 있는 사회도 아니다. 미혼모 가족의 양육 지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영역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해외입양의 우선적 대안으로 미혼모의 아동양육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혼모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해외입양은 종식될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미혼모 자녀 입양을 중단시켰던 선진국의 길을 한국도 빨리 따라 가야한다.

참 · 고 · 문 · 헌

- 유엔미래포럼. 2009.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낳아 키우는 한국의 양육미혼모 수기집」
- 윤주희. 2007. 『다녀왔습니다』 박상희 옮김. 북하우스.
- 최승희. 2010.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 제60차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2010년 2월 24일 프레스센터
- 트렌카 제인 정(정경아). 2005. 『피의언어』 송재평 옮김. 와이켈리.
- Bruining, Mi Ok. 1997. "A few words from another left-handed adopted Korean lesbian" edited by T. Bishoff & J. Rankin. Seeds from a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Glendale, CA: Pandal Press.
- Dorow, Sara. 1999. I Wish for You a Beautiful Life: Letters from the Korean Birth Mothers of Ae Ran Won to their Children. Edited by Sara Dorow. MI: Yeong & Yeong Book Company.
- Hurdis, Rebecca. 2007. Lifting the Shourd of Silenc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Truth, Legitimacy, and Justice.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Kim, Eleana. 2007. "Remembering Loss: the Koreanness of Overseas Adopted Korean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Wilkinson, Hei Sook Park. 2007. Birth is More than Once: The Inner World of Adopted Korean Children. MI: Sunrise Ventures.

오래된 침묵, 여성연예인에 대한 성적 이중규범이 바뀌어야 깨질 수 있다

이 은 심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작년 3월 장자연씨의 죽음으로 인해 성상납 등 연예계의 오랜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침해현실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사실 여성연예인들의 갑작스런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은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기획사, 제작사, 스폰서, 대중들에 의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아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여성연예인의 인권현실에 대해서, 한계적이거나 최초로 공식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 있다고 하겠다¹⁾.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몸로비’, ‘흑심’ 등의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연기자 중 60.2%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보도하면서, 성접대 제의에 쉽게 응한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문란을 질타하였다²⁾.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성접대 제의를 거부한 여성연기자의 절반 가량(48.4%)이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여성연예인의 성적 문란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및 불공정한 방법으로 캐스팅이 결정되는 연예계의

1) 이수연 외(2010),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연기자들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 여성연예인 60% “성접대 제안 받아봤다” 충격, 『스포츠투데이』 2010년 4월 27일자.

연예계 시스템이 만들어낸 여성 연기자 ‘몸로비’ 문제, 『한국일보』 연예 2010년 4월 28일자. 화려한 삶 뒤편에선 ‘검은 손길’에 무방비... 여성연예인 60% “성접대 제의 받아”, 『국민일보』 2010년 4월 27일자.

흑심에 포위된 연예인들, 『한국일보』 2010년 4월 28일자

여성 연기자에게 뺨치는 ‘악마의 유혹’, 『한겨레』 2010년 4월 27일자

왜곡된 구조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조사결과에서는 여성연예인들의 성접대 및 성희롱 등 성적 침해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및 성형을 강요하거나 사생활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성연예인의 '성접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하면서, 여성연예인의 노동권 전반을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연예인을 '성적 존재'로서만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침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및 노동권의 전반적인 인권침해를 주목하면서,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남성권력들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 매개되는 여성 연예인

연예계의 성접대 관행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문란'을 문제삼으며, 여성연예인은 '모두가 그렇고 그런 (행실 나쁜) 여자들'이라는 비난을 일삼는다. 흥미로운 점은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연예인을 두고 각종 추측성 기사가 떠돌며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달리, 성접대를 받은 남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거나 그 신분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이다. 성접대는 말 그대로 주고받는 것임에도 성접대를 제공받은 남성보다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에게 더 큰 비난이 쏟아지는 현실은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힘없는 약자인 여성연예인의 성적 문란을 비난하고, 도덕적

으로 훈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여성 연예인들에게 이런 성 접대를 제안하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연줄로서 연예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두 인맥이고, 사적인 자리를 빙자해 있죠. 친한 피디랑 술 마시고, 친한 기자랑 술 마시고 이런 식의 자리인 건데, 거기 매니저먼트사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 하나 있는데, 한 번 불러볼까? 이래서 인사시키고. 인사시키는 자리인 건데 그런 자리에서 피디나 기자들은 뭐, 놓고 이런 식? (전직 영화 잡지 기자)³⁾

기획사, 제작사, 에이전시, 언론, 광고주 등 모두 남성들이 주도하는 연예계에서 여성연예인들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남성권력들 간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술자리 속에서 여성연예인들은 '상품'으로서 매개되고 있을 뿐이다. 남성들은 어떤 여성연예인을 부를 수 있는가? 어떤 여성연예인들에게 성접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여성연예인의 외모나 성적 매력뿐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특별함이 '남들과 차별화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왜곡된 과시욕과 성접대 문화를 비판하지 않은 채, 여성연예인들만을 문제삼는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다.

그런데 스타를 데리고 있는 매니저먼트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스타들에 신인들을 끼워 팔면 되니까 캐스팅을 위한 성상납은 별로 없을 거라 보는데, 다른 권력관계들 오히려 매니저먼트사와 다른 힘 있게 된 사람들? 그런

3) 이수연 외(2010),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연기자들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75쪽.

:: 이슈브리프

기업 쪽이나 언론 쪽, 이런 식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스폰 관계라든가, 성상납까지는 아니어도 술자리에 불러가서 호스테스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장자연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네들 술 마시다가 너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게 미묘한 거지. 아예 대놓고 성상납이 아니라.(전직 영화잡지 기자)⁴⁾

여성연예인들이 술자리 시중이나 성접대 등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연예계에서 유명인사와의 연줄을 만드는 것만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연예인들의 대다수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디션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오디션에 대해서 연기자의 78.9%, 연예인 지망생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연기자의 80.6%, 지망생의 79.2%가 투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⁵⁾. 이렇게 공식적인 오디션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비공식적인 미팅이나 연줄이 캐스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유력인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여성연예인이 성접대 등을 통해 배역을 따내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답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성거래는) 원래 연기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이다. 과거에 유명 배우와 감독의 결합, 정치인 관여 등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헐리웃에도 있고, 자기 몸으로 출세하려는 동료 후배 연기자들도 많다.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지금 유명해진 연예인들을 보라. 그들 중

에 몇 %나 클린 연기자일까. 한 자리 수도 안 될지 모르겠다. 어떠한 방법도 없다. 어렸을 때는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리라 했지만 출연 기회도 없어지고 연기력도 떨어지고 카메라도 무섭고 대인기피증이 생긴다. 또 유명 연기자치고 재벌과의 추문 안 나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도 제2, 제3의 장자연 사건을 발생할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면 뭐하나. 과거에 문제 PD들이 지금은 방송국 간부, 제작자, 유명 연출자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단지 시간 낭비라고 본다. 우선 나부터도 나이가 들어 과거를 생각해보니 지금 현실과 타협해 유명해진 동료가 부럽고, 왜 과거에 혼자 바보짓을 했을까 생각한 적도 꽤 있다. 만약 내 딸이 연예인이 되겠다 하면 반대할 것이고 그래도 하게 된다면 현실과의 타협을 묵인할 수도 있겠다.⁶⁾

(곡을 내려고 앨범 작업을 하는데) 식사를 하자고 몇 번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만나고 이제 다 작업이 되니까 리메이크를 들어가니까 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의 공백기가 있다가 그런 기회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왔죠. 자리 박차고 나왔었어요. 사람들 다 듣고, ...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 감독님한테 했다는 소리가 내가 연습을 안 해왔고 다 이상한 애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알던 오빠랑 연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너 누구 알지 알지? 작업을 하려다가 못했지. 근데 좀 잘하고 다녀”라고 하더라구요 (여성연기자, 30대 후반)⁷⁾

뿐만 아니라 성접대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실하지 않다’는 악소문을 퍼뜨리거나, 이후 캐스

4) 같은 책, 167쪽.

5) 같은 책, 76쪽.

6) 같은 책, 174쪽.

7) 같은 책, 173쪽.

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 여성연예인의 자괴감은 더욱 커지게 되며, 심지어는 성접대를 거절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한다.

2. 못생겨도 문제! 성형해도 문제! 끝없이 열등감을 생산하는 구조

여성연예인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강요받으며, 다른 여성연예인들과 혹은 주위사람들과 외모를 비교당한다. 이번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⁸⁾에서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 여성 연기자의 54.1%, 여성 연예인 지망생의 79.8%가 외모(얼굴, 몸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여성연예인에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많은 여성연예인들이 성형, 피부관리, 다이어트 등 외모관리에 열을 올리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한다. 이는 단지 연기자뿐만 아니라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가수나 웃음을 제공하는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개그맨들의 경우 못생긴 외모는 연예활동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며, 옥동자나 갈갈이처럼 일부 개그맨들은 못생긴 외모를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개그맨의 경우 남성들과 달리 못생긴 외모로 성공한 이후에 성형수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연예인들이 얼마나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여성연예인이 무리하게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은 단지 본인이 스스로 외모나 몸매나 집착한다기보다는, 기획사나 매니저 등 주변인물의 영향에 의한 경우도 많다. 여성연예인의 외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형이나 다이어트할 것을 권유받는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기자의 54.6%, 연예인지망생의 72.3%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으며, 연기자의 55.6%, 연예인지망생의 58.7%가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너 짝눈이다, 눈 풀렸다 눈 조금만 더 손대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주로 회사 사람들. 회사에서 주로 성형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 짝눈이다 너 왼쪽 눈 풀렸어”. 특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언니 눈... 뭐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힘들어” 하세요. 눈 풀리거나 이러면 짝눈이니깐 이걸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그런 거. (여성 연기자, 20대 초반)⁹⁾

사실 끊임없이 좀 뭔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 저는 그냥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의 단점을 제가 캐내면 정말 끝도 없어요. 주변을 보면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이게 못생겼지, 이게 못생겼지 이런단 말이에요.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끝도 없이 제 미운 점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좀 부족한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닦달을 하는 것예요. 회사에서 “너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너 언제 할 거니, 살을 언제 뺄 거니”, 정말 그런 압박이 심

8) 같은 책, 73쪽.

9) 같은 책, 166쪽.

한 거예요. (여성연기자, 20대 초반)¹⁰⁾

이러한 과정은 여성연예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예인으로서의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기획사의 성형 및 다이어트 강요는 여성연예인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외모의 아름다움은 ‘타고난 것’,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연예인을 옥죄며, 설령 그녀들이 성형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획득한다고 하여도 대중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각종 성형 전후를 비교한 사진들은 여성연예인의 연예생활 전체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악플과 가십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여성연예인들은 성형을 한 이후에도 자연미인과 비교당하며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3. 고립된 여성연예인, 세상 물정 어두워 사기 피해 속출

여성연예인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대중들의 시선 때문에 사생활 또한 자유롭지 못하며 폐쇄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예인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고립되며, 매니저나 기획사에 더욱 의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들은 여성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하며, 성폭

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도록 만든다.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정말 외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무섭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자기 혼자 공공 알겠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되게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성연기자 지망생, 20대 초반)¹¹⁾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기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여배우들은 자기 얘기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모두들 이미지에 갇혀 있어야 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기도 해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도 자기 매니저와 주로 대화를 나누고 녹화 시간을 제외하면 승용차에 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여성연기자, 30대 중반)¹²⁾

기획사는 여성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중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동료연예인들로부터도 여성연예인을 고립시킨다. 동료연예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서로 간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획사에서는 사전에 모든 외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여성연예인들을 고립시키며, 여성연예인들은 점점 더 기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제가 그때 생활 패턴이 뭐였냐면, 화목토는 연기레슨 받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받거든요. 그전에 집에 있다가 대표가 데리러 와요. ... 그리고 본인 볼 일 보고 나 레슨 끝나면 데리러 와요. ... 그리고 맨날 전화해서 확인해요. ...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만나다가도 남자도 못 만나게

10) 같은 책, 166쪽.

11) 같은 책, 189쪽.

12) 같은 책, 189쪽.

하고, 여자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집착 아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숨통을 조인다고 해야 하나. ... (학원 안에서) 말도 못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 받지도 못하고, 애들이 전화번호 알려달라도 해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리고. (여성연기자, 20대 초반)¹³⁾

일반인과 달리 은행이나 상점출입조차 자유롭지 않은 연예인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세상물정에도 어둡게 된다.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되지 않고 비공식적인 미팅이 캐스팅을 좌우하는 연예계의 구조 속에서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 또한 자주 발생한다. 연기자 중의 절반 가량(45.5%)이 감독, PD, 기획사 사장 등을 사칭하여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40%가 출연료를 착복당한 경험이 있으며, 연기 트레이닝, 캐스팅 비용 등을 빙자한 금품갈취 피해도 15.5%에 달한다¹⁴⁾.

5천명이 넘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 5명을 뽑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집에서는... 150억인가 200억 드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문제 때문에 딜레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파이프 담배 사다 나르고 왜냐면 딸이 5차까지 되서 천대일로 뚫었으니까 집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다 대고 연예협회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2백만원인가 냈고, 그것도 사기더라구요. ... 그 대표란 분 투자를 받아갖고 미국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협회비도 떼먹은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여성연기자, 20대 초반)¹⁵⁾

각 방송사별로 공채로 연예인을 모집하는 과거와

는 달리, 기획사가 발굴한 연예인을 방송사에 공급하는 현재의 연예산업의 구조 속에서 기획사의 힘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소기획사가 난립할 뿐만 아니라 기획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연예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 오래된 침묵, 여성연예인에 대한 성적 이중 규범이 바뀌어야 깨질 수 있다.

〈여배우들〉이라는 영화에서 고현정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혼 얘기하는 걸 보면 지×하는 사람 많을 걸?"이라며 서러운 울음을 감추지 못한다. 또 다른 여배우인 윤여정은 "그 당시에는 이혼한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년 정도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비화를 털어 놓았다. 당대 톱스타인 고현정마저도 이렇게 서럽게 통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배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싸늘하고 이중적이다. 대중들은 아름다운 여배우에 대해서 '여신'이라고 열광하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열광은 하루아침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으며, 순식간에 '여신'에서 '창녀'로 추락할 수도 있다. 대중들은 여성연예인을 TV나 영화에서 나온 이미지로서만 소비할 뿐, 여성연예인들이 사생활이나 약점을 가진 현실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들에게는 여성연예인들 또한 남들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13) 같은 책, 165쪽.

14) 같은 책, 68쪽.

15) 같은 책, 161쪽.

이슈브리프

각종 여성연예인 비디오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이 노출된 여성연예인들의 경우, '사회적 물의' 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은퇴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받는다. 오히려 여성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이 유출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사라져야 했다. 만약 여성연예인들이 섹스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는 그녀들이 아니라 성관계 비디오를 함부로 유출한 남성들에게 있는데도 말이다.

대중들은 여성연예인이 자신들을 매혹시킬 만큼 섹시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녀들이 섹스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섹시하되 섹스해서는 안된다' 는 성적 이중규범은 모든 여성연예인이 경험하는 딜레마이다. 이런 딜레마는 결국 여성연예인의 사생활을 베일 속에 감추는 것으로 해결되며, 여성연예인을 TV나 영화 속의 공허한 이미지에

가두어 놓는다. 그녀들은 현실에서의 자신을 지운 채로, '성적 존재' 로서만 끊임없이 재현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여성연예인의 침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정하지 못한 오디션, 노예계약 등 연예계의 잘못된 산업구조와 성접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연예인 자신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연예인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이중적 태도 및 보수적 성규범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오랜 침묵을 깨뜨린 여성연예인이 사회적 비난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재기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자신의 죽음으로 연예계의 비리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신인 여배우가 아니라, 왕성한 활동으로 연예계의 비리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여배우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고 장자연이 우리에게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매체가 욕망하는 여성의 몸과 성, 여성의 몸과 성이 욕망하는 매체

1. 정신없이 늘어나는 매체 그리고 이들을 채우는 여성의 몸과 성

돌아보면 사실 정신없다. 참으로 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일상을 에워싸고 있다. 특히 신종 텔레비전들이나 모바일 매체들의 출현과 이로부터 중층적으로 겹쳐지는 매체 간 경쟁의 향연은 참으로 기괴하고 뜨겁다. 매체 수용자나 이용자의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많아져서 좋다는 분위기도 팽창하고 있다. 쏟아지는 채널과 텍스트에 둘러싸이고 거의 모든 시공간에서 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미디어 급류’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매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미지와 이야기들에 모두 동일한 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의 매체 환경은 무척이나 반갑고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불쾌감을 주거나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이 어떻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매체 간 경쟁의 향연을 여성의 몸과 성이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여성의 몸과 성을 둘러싼 이미지와 담론들에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매체의 에로틱한 여성의 이미지와 성을 기대하고 시청하는 것을 즐겨한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의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는 매체들에 더욱 몰입할 것이다. 단순한 오락과 기분 전환의 차원이든 성적 욕망의 순화와 대리 충족의 차원이든 매체 속 여성의 몸과 성은 강렬하게 우리를 매혹하고 몰입시킨다. 지금의 매체들은 성적인 정동과 감정, 느낌과 감각적 체험

들을 가속화하고 확장한다. 우리는 매체와의 조우, 체험과 매혹, 강렬한 감각의 요소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기대한다. 그리고 바로 이와같은 매혹과 체험의 중심부에 여성의 몸과 성이 자리잡고 있다. 매체 속 여성의 몸과 성은 대부분 맥락이 결여된 채 페티시즘적 대상으로 부분화됨과 동시에 전면화된다. 여성의 몸과 성은 항상 얼굴, 허벅지, 엉덩이, 가슴, 목덜미, 각선미 등과 같은 신체의 부분화된 페티시즘을 자극하는 형태로 ‘뜬금없이’ 출현한다. 텔레비전의 광고, 잡지의 여성 이미지, 큰 가슴을 살짝 가리운 채 부풀어 오른 엉덩이를 부각시킨 사진들이 맥락없이 연결되는 소위 정론지들의 인터넷 기사들. 시도 때도 없이 헉헉거리며 신음을 질러대는 여성들의 몸부림이 가득 찬 케이블과 위성 텔레비전 채널들. “나 오늘 교복입고 커피색 팬티 입었어”라는 문자와 함께 그 많은 오빠들을 찾는 휴대폰 속 여성들. 이들 하나 하나를 모두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2. 미디어가 욕망하는 여성의 몸과 성, 어떻게 읽을 것인가?

페티시화된 여성의 몸과 성을 욕망하는 매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무력한 반응의 하나일 뿐이다. 남성 지배적인 욕망의 표상과 시각성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본다면, 매체 속 여성의 몸과 성에 매혹당하고 몰입하는 것을 개인이 행하는 존재의 쾌락적-자기 배려의 한 축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속 여성을 즐기는 것을 쾌락적 자기 배려라고 (관용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에로티시즘은 노동을 하게 되고,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부끄럼 없이 행하던 성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성을 통제당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등 인간이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구성되고 지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에로티시즘은 양립 불가능한 세계¹⁾ 즉 자연과 문명의 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자기 배려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의 자기 배려의 형식으로서 에로티시즘은 노동과 이성-무질서와 폭력의 대립적 세계에서 노동과 이성의 질서를 방해하는 사회적 금기의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다양한 매체와 통로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또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유통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에로틱한 장면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 왔던 매매춘의 장소나 유곽 등은 이러한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이곳에서는 온갖 광적인 변태 성행위, 나체로 남성들을 시종드는 매춘부, 나체 무도회, 집단적인 탕음난무가 이루어졌다²⁾. 또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위한 감각적 욕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매우 급진적인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시위 도중 유방을 노출했던 일이나 유럽에서 68혁명의 물결이 전파될 때 기성 질서에 대한 상징적 저항으로서 여성들의 젖가슴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위 형식의 하나였다. 또 선거에서

1) cf. Bataille, G.(1957). L'erotisme, 조한경 역(1996). 『에로티즘』, 9-42쪽, 서울: 민음사.

2) cf. Fuchs, E.(1910).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 Die Galante Zeit, 이기용 역(1989). 『풍속의 역사 III : 색의 시대』, 319-335쪽, 서울: 까치글방.

어떤 정당은 특정한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여성의 누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고, 대립하는 두 집단 사이에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벗은 몸을 이용했다³⁾. 에로티시즘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목적에 이용되든지 간에 각양각색의 에로티시즘의 표현물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공개적·비공개적, 공적·사적으로 유통되고 수용되었고, 사람들은 항상 더 많고 강렬한 표현물을 기대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맥도너(McDonagh)는 영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무성 영화 시대부터 영화 제작자들이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한 운명을 암시하거나 약간의 육체만 보여 주어도 대중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들은 함께 요란스러운 춤을 추며 서로 엉켜들어 매혹적인 섹스의 우상이 되었으며, 영화 관객들은 황홀감에 도취되어 그들을 바라보았다”⁴⁾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대중이 기대하고 욕망하며 가능한 모든 통로와 수단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던 에로티시즘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검열하고자 했던 대상이기도 했다. 에로티시즘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형식과 내용의 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역사 또한 길고 강력하다. 또 우리는 대중매체의 에로티시즘이 반사회적이고 저질스러운 문화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올바른 성 관념과 사회적인 의식의 계몽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비판하고 규제하였다. 특히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성적 경험을 미적인 경험(aesthetic experienc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로티시즘에 대한 관심과 자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은 반 문화적인 것, 반 미적인 것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문화적이고 미적인 것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상태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로틱한 경험의 복합적인 측면들에 대한 분석 보다는 도덕적인 재단과 비난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거나 에로틱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해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대중적 욕망을 제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도 일면 타당하게 들리고, 수용자들이 매체로부터 얻는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간단하게 통제될 수 것이란⁵⁾ 생각에도 쉽게 동의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에로틱한 이미지가 집단적 환상과 욕망을 수렴하고 파급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구조에서 다양한 위치에 놓인 개인 및 집단들이 자신들이 품고 있는 욕망과 환상을 그 이미지에 투영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 심리학을 구성한다⁶⁾는 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을 욕망하는 매체를 도덕적 규범론이나 문화산업론, 젠더이론의 시각에서 간단하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문제일까? 여성의 몸과 성을 욕망하는 지금의 매체들에 무조건 관대하거나 지지할 수만도 없다. 그래서 질문하자. 지금의 매체가 보여주고 욕망하는 여성의 몸과 성에 진정 만족하는가? 이들의 정동과 욕망의 형식들에 맹목적인 관용

3) cf. Duerr, H. P.(1992). *Obszönität und Gewalt*, 최상안 역(2003), 『음란과 폭력 :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총통의 역사』, 67-99쪽, 서울 : 한길.

4) McDonagh, M.(1996). *The 50 Most Erotic Films of All Times*, 신현철 역(1997), 『세계에서 가장 에로틱한 영화 베스트 50』, 20-29쪽, 서울 : 천마.

5) 김예란(2004). 텔레비전과 몸의 정치학 : 소녀 육체의 미디어 표상, 『프로그램/텍스트』, 2004년 10호.

6) 김예란 같은 글.

이슈브리프

의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이것들이 진정한 자기배려적 쾌락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또는 행복의 경제학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대에 집중 편성되는 란제리 패션쇼의 여성들, 섹시걸이나 비키니 패션 컨테스트, 디저트 먹고 틱만 나면 나누는 섹스 이야기, “이 더러운 X.....저 계집애랑 자고선 나한테 병 옮겼지?...내가 옮긴 거 아냐, 진단서 보여줘” “키스하면 미치죠. 키스가 최고예요.....제 입술 괜찮아요? 애무 잘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매체 속 장면과 이야기들이다. 이 매체들이 제공하는 여성의 몸과 성은 우리들의 자기배려적 쾌락의 활용보다는 시청각적 자극을 강화하고 인간의 에로스를 극히 저급한 방식으로 이미지화하는 효과를 낳은 것에 불과하다.

3. 여성의 몸과 성을 통한 오락산업자본의 축적 체계의 가속화

대중매체의 야만성과 저질성은 각 사회의 우파와 좌파, 페미니스트, 도덕주의자 등 거의 모든 사회 집단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기든스(Giddens)는 현대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⁷⁾ 그리고 그는 성의 상품화라는 맥락에서 섹슈얼리티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쾌락을 낳고, 쾌락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상품 마케팅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최소한 그러한 효과를 약속해준다. 성적인 이미지는 일종의 거대한 판매 전략으로서 시장의 거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성의 상품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욕구-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도록 만드는 수단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섹슈얼리티의 부각은 노동과 기율, 그리고 자기 부정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질서로부터 소비주의와 나아가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질서로의 이동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중심성은 오늘날 성적 행위가 갖는 강박적 성격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강박성은 포르노그래피, 외설 잡지나 영화 등의 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중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성적 경험을 추구하는 현상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⁸⁾

기틀린(Gitlin) 또한 사람들은 미디어를 접하지 않았으면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섹슈얼리티도 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화면 속의 나체를 보고 섹스에 열광하는게 아닌지, 쾌락을 얻기 위해 혼자서 몰두하는 동안 비사교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⁹⁾ 그는 또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렬하고, 더 완전하고, 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가 우리 삶을 고양시키고 더 밀도있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감정과 느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¹⁰⁾

기틀린은 현대의 대중문화와 대중매체가 매일의 기분전환을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시적인 감정과 고강도의 자극을 필요로 했다고 본다. 그는 “민주주의의 국가는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7) Giddens, A.(1992).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배은경 역(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그리고 에로티시즘』, 262쪽, 서울 : 새물결.

8) Giddens, 같은 책, 263-264쪽.

9) Gitlin, T.(2001). *Media Unlimited*, 남재일 역(2006). 『무한 미디어 : 미디어 독재와 일상의 종말』, 20쪽, 서울 : Human & Books.

10) Gitlin, 같은 책, 42쪽.

보다 삶을 쉽게 하는 기술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대중문화의 스타일은 매혹적이고 부정확하며 느슨하고 대개는 열정적이며 대담하다. 작가(생산자)들은 디테일의 완벽보다는 신속한 기법을 추구하고, 박학 다식함보다는 위트가, 심오함보다는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작가의 목표는 독자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놀라게 하는 것이고 취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다.¹¹⁾

기든스나 기틀린의 이같은 주장들은 현대매체문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보다 개인화된 맥락에서 수용한다. 매체의 개별적 수용과 이용은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대상을 보다 안전하고 여유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가 중단되거나 침범당하지 않기를 욕망한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들어와 매체 바깥으로 내보내주겠다고 제의하면 우리는 오히려 거부한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매체의 스펙터클에 흡수되고 개인들은 서로 간에 분리된다. 모두 단독적으로 스펙터클에만 관여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스펙터클에 흡수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여진다. 분리와 통일, 이것이 바로 매체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의 기본 형식이다. 매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분리와 함께 통합을 이끌어 낸다. 몸, 섹스, 사랑, 욕망이 개인들에게 분리되어 사고되고 추구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공통된 에로티시즘의 세계상을 소유한다. 우리가 점점 더 파편화된 신체의 일부분에 집착하는 페티시적 욕망을 가속화하는 과정에 이같은 매체가 무관할 수 없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인

간들의 삶은 거의 완전하게 단순한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로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과 모바일, 상품시장 등에 의하여 중개되는 자극들은 성욕, 탐욕, 새디즘과 같은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지금 매체의 생산자와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여성의 몸과 성을 수용자들의 강박증적인 쾌락에 복무시키면서 오락 산업 자본의 축적과 회전을 견고하게 하려는 문화세속주의에 지배되고 있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충격과 탐닉의 유인효과를 동원할 수 있는 영상 자원으로서 여성의 몸과 성은 자본주의 오락 산업의 최고의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¹²⁾ 우리는 오직 육체의 관찰과 시각적 쾌락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인간화된 자동기계식 에로티시즘의 확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에로티시즘의 축소이고 퇴행이다. 소수의 상업적인 에로티시즘 생산자들에 의해 인간의 에로스적 욕망들이 획일화되고 표준화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이 포르노그래피적이고 새도-마조히즘적인 오락산업의 자본 축적과 순환의 욕망 속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매체의 에로티시즘과 섹슈얼리티는 대중매체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형의료산업, 성 산업, 어린이 장난감 산업 등의 외부 산업 및 상업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매체들은 더욱 더 여성의 몸과 성의 과잉을 향해 통제되지 않는 야수화된 경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매체의 욕망의 과잉을 비판해야 한다. 부분화된 여성 육체의 반복적인 과잉 묘사는 인간의

11) Gittlin, 같은 책, 68-69쪽.

12) 박종성(1999), 『정치와 영화 : 영상의 지배전략과 권력의 계산』, 239쪽, 서울 : 인간사랑.

상상력 속에서 실제의 인간 육체를 대체하고 종합적인 육체의 발견과 활용을 어렵게 한다.

4. 매체와 매체 뒤편의 남성들의 페티시적 욕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체의 에로티시즘을 발견하기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몸과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여성의 몸과 성을 욕망하는 매체의 에로티시즘에 대해 엄숙한 도덕적 비판만을 수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판을 수행하는 주체마저도 사실은 에로티시즘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한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쾌락의 활용은 인간 존재의 자기배려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매체의 욕망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과제는 매체의 욕망과 쾌락 제공의 형식들의 관리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때 관리법은 어떤 행위의 정당하고 받아들일 만하며 '자연스러운 형태'를 규정하는 규제 체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쾌락이 덜 방해받는 조건들, 쾌락의 유쾌한 활용과 관련된 조건들의 관리이다.¹³⁾ 우리는 몸과 성을 보다 유쾌하고 탈 남성-성기 중심적이며, 시각적 자극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벗어나는 매체적 소통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매체를 포함한 오락산업의 섹슈얼리티는 사실 강박증적이고 폭력적이며 착취적이다. 볼 꺼진 극장의 스크린처럼 개인들의 눈과 귀를 파고 드는 매체의 섹슈얼리티의

대부분은 시각의 자극만을 위한, 오직 남성-성기 중심적인 배설만을 위한 욕구의 반영물이다. 또 그러한 섹슈얼리티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매체의 여성과 이들을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매체오락산업의 종사자들은 오락산업의 체계적인 착취 구조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 양화되고 표준화된 인격체의 사이즈는 미의 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몸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우리의 에로티시즘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수준, 반복해서 주어지는 대상에 고착된다.

그래서 매체의 욕망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가 아닌 관리술이 문제라면 우리의 접근 또한 정부나 매체규제기구에 의한 규제방안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대안적인 에로티시즘의 미학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히데야키에 따르면, 각 사회에서 특수하게 처리되는 성과 성욕의 시스템 차이를 무시하고 성의 다형성과 이에 대한 복잡한 대응을 인류의 필연적인 보편적인 요청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에서 성적 욕망이 형성되는 양상이 다르면 성욕의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욕이란 그것을 환기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것인 한 그 관계 형성에 따라서 성욕의 내용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할리우드에서 영화는 일 년에 약 400편 정도 제작된다. 반면, 포르노 산업은 10,000개에서 11,000개에 달하는 포르노 영화를 제작한다. 매년 7억개 정도의 포르노 비디오와 DVD가 대여된다. 또 잡지, 인터넷 웹사이트, 케이블, 호텔 방 포르노그래피, 섹스 토

¹³⁾ cf. Foucault, M.(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 Tome 3 Le souci de soi, 이혜숙·이영목 역(2004). 『성의 역사 3 - 자기 배려』, 147쪽, 서울 : 나남출판.

¹⁴⁾ Hideyaki T, 김경자 역(2006).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106쪽, 서울 : 삼인.

이 등을 포함한 포르노그래피 수입은 매년 1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입은 영화 수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미식축구와 프로농구, 프로야구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크다. 포르노그래피는 이제 곁들이 프로가 아니라 중심 이벤트가 되었다.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인구가 포르노그래피를 경험한다. 포르노그래피 시장은 매우 다양해, 새도-마조히즘, 노예, 절단, 노인, 동물, 교차인종과 같은 희귀 포르노에서부터 주류 이성애 포르노, 게이와 레즈비언포르노, 여성에게 호의적인 춘화도와 같은 틈새 포르노까지 폭넓게 제작·소비된다.

일본에서는 소위 틈새 포르노 산업이 유행이다. 60세부터 14년간(현재 75세로 추정) 총 350편 이상의 포르노에 출연했던 포르노 스타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노인 포르노 산업의 번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뒤따른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인터넷 상의 포르노 콘텐츠의 소비에 연간 1인당 6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불한다. 한국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은 세계 5, 6위권에 해당한다.¹⁵⁾ 텔레비전, 비디오, 포르노 전용 극장, 포르노 연극, 성 산업 등을 합치면 한국인이 포르노에 소비하는 돈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몸과 성은 단지 침실의 문제로 국한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해지고,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을 말하기'에 익숙해지고 있고, 사회적인 검열과 차단 노력들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또 포르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항상 그리고 도처에 포르노가 존재하며,

문학과 텔레비전, 신문과 잡지, 영화와 인터넷은 포르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친다. 섹스는 억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해지고 보여지며 토론되어진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욕구와 욕망의 중심부에 참으로 많고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거대한 몸과 성의 세계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당시 <이프>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진영은 '반 성폭력 페스티벌'과 남성의 성적·시각적 쾌락을 보증하는 지금까지의 포르노에 대항한 '포르나(Porna)' 영화제와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남성 지배적인 성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페로티시즘(feroticism)'이라는 용어를 꺼내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은 포르노가 남성만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며,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성 지배적인 성 질서를 재생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고 비판한다. 특히 포르노 산업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상황이며, 주된 소비자 또한 남성임을 감안한다면, 남성 중심의 포르노가 재생산하는 반여성성에 대한 비판들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페로티시즘의 주창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예를 들어, '포르노 산업에서 여성들이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만드는 포르노는 어떤가?', '여성을 긍정하는 포르노는 어떤가?' 식의 질문들이 이들에 의해 제기된다. 2004년에 열린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벌거벗은 페미니스트>라는 다큐

15) cf. 한겨레 21, 2004년 5월 4일.

∴ 이슈브리프

멘터리 영화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여성주의적 포르노란 여성에 의해 제작되며, 여성의 통제 하에 여성의 욕망이 전달되는 포르노를 말한다. 이들은 포르노 산업의 희생자이기를 거부하며 포르노 배우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일이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새로운 본능에 눈뜨게 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페로티시즘은 출발부터 페미니즘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유발했다. 여성의 섹스와 여성을 위한 포르노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한마디씩은 다 해볼 수 있는 주제였고, 그 자신이 내용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 그 자체(또는 소음 그 자체)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비어있는 기표’ 인지 모른다.

우리는 페로티시즘의 전략들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페로티시즘과 같은 전략들은 현재의 수많은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남성지배적인 에로티시즘에 저항하면서 다른 쾌락의 활용을 매개할 수 있는 매체 전략을 상상해보는 사고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사히로는 남성들의 불감증을 지적한다. 불감증에 빠진 남성들이 빠져 드는 것은 ‘미니스커트’, ‘제복’, ‘롤리타 콤플렉스’, ‘성폭행’ 과 같은 망상이자 환상이다.¹⁶⁾ 마사히로가 지적하는 것들은 포르노나 남성지배적인 매체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들이다. 지금의 매체들은 쾌락적 자기 배려와 욕망(남성이든 여성이든)의 추구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감과 기든스나 기틀린의

현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비판의 경계 어느 쯤인가서 있다. 포르노와 미디어 에로티시즘은 인간 특히 남성의 ‘일상적-성적 야수화’와 ‘성적 길들이기(Entwilderung)’에 복무하는 오락산업의 전형이다. 우리가 성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코드화된 성적 이미지와 성관계의 자극들에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는(남성이든 여성이든) 만성적인 권태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능동성을 주는 자극에 생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은 권태에 빠지지 않으나 현대인들은 그러한 자극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는 이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말하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말함과 보여줌을 통해 구성되는 강박증적인 섹스의 공학을 통해 자유롭게 성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열려있다.

¹⁶⁾ Masahiro, M.(1996). Kanjinai Otoko, 김효진 역(2005). 『남자는 원래 그래?』, 서울 : 리즈.